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운전면허 갱신 결격사유에 범칙금·과태료 미납 추가 등〉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70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지영의원 등 17인
2. 제안연월일 : 2024. 11. 18.
3. 회부연월일 : 2024. 11.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금액이 1조 450억원에 이르고 그 중에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6,6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된 과태료등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갱신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체
 납된 과태료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체납한 범칙
 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운전면허증의 갱
 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1. 제73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u><신 설></u> ④ (생략)	③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16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나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 「도로교통법」 제164조는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¹⁾.

1) 「도로교통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61조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도록 하고 있음²⁾.

이처럼 현행 규정은 미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 시 가산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범칙금 및 과태료 수납물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간접강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상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체납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³⁾ 일반적인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⑥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3) 「도로교통법」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시·도경찰청장은 제98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제16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기간 또는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도별 범칙금 부과·징수 현황>

연도	과태료				범칙금			
	부과 (만건)	부과액 (억원)	납부액 (억원)	납부율 (%)	부과 (만건)	부과액 (억원)	납부액 (억원)	납부율 (%)
2020	1,552	7,932	7,506	94.6	205	0.81	0.80	98.8
2021	1,764	9,327	8,773	94.1	195	0.75	0.72	96.0
2022	2,266	12,294	11,425	92.9	198	0.76	0.73	96.1
2023	2,428	13,157	11,756	89.4	185	0.72	0.70	97.2
2024 (~9월)	1,906	10,261	7,906	77.1	159	0.62	0.5	80.6

※ 과태료·범칙금 징수·납부 현황은 과태료·범칙금 부과 이후 통계산출 시점('22. 7월)까지 해당 과태료·범칙금을 징수·납부한 건수임.

※자료: 경찰청

이에 개정안은 체납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수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수요가 제한적인 국제운전면허증과 달리 운전면허증 갱신 거부의 적용대상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봄.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범칙금·과태료의 체납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보행자로서의 의무 위반 등 운전면허증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허 갱신 거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3조4)에 따른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공감하나,

명의도용차량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고,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약 38%를 차지하는⁵⁾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증 갱신의무 기간 중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있을 수 있으므로⁶⁾,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충분한 논의 후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의무적으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345

4) 「행정기본법」 제13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5) 2022년 7월 기준, 전체 면허 소지자 3,400만명 중 제2종 면허 소지자는 1,303만명임.

6) 제1종 면허의 경우 면허증 갱신 시 반드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면허가 취소됨(기한 경과 후 1년)